

소송 등의 판결·결정(1심)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(기)
2. 원고·신청인	김00 외 1명
3. 판결·결정내용	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,819,312,328원 및 위 각 금원 중 2,45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1. 24.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
4. 판결·결정사유	선행 중재판정에 따라 피고의 이행의무 및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고, 기타 피고의 주장은 선행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
5. 관할법원	서울동부지방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20년 8월 20일
7. 확인일자	2020년 8월 27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